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1229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1. 11. 22.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54,33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154,3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21. 11. 22.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865,7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C은 원고에게 8,865,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판사 이재은

##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서산시  담 912㎡
2. 충청남도 서산시  대 481㎡
3. 충청남도 서산시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 단독주택 1층 99.78㎡
4. 충청남도 서산시  담 731㎡      풀.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D (주민등록번호 1)

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고, 위 D 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 이며,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D 의 상속지분을 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약의의 '수익자' 입니다.

##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D 은 2007. 8. 21.경 소외 주식회사 E 의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 할 것을 약정하고 그즈음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카드 가입신청서 참조).

그런데 위 D 은 위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E 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D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D 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집19148호), 2015. 5. 29.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지급명령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D는 원고에게 금 9,605,412원 및 그 중 금 2,385,974원에 대하여 2022. 5. 4.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소의 F는 위 D의 아버지인데, 위 F는 2021. 7. 28. 사망하였고, 위 D는 위 F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F의 상속인들 및 위 D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에게, 별지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1. 11.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 명의로, 별지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실질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D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D의 재산인데, 위 D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들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채무자 D의 형제로 추정됩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위 D과 피고 B 사이의, 위 D과 피고 C 사이의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D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위

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 그런데 위 부동산은 사해행위 이전인 2012. 10. 8. '채권최고액 6,500만원, 근저당권자 G 조합' 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21. 12. 21. 해지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따라서 본건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2022. 5. 3.까지의 원리금인 금 9,605,412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채무자의 동시처분으로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법원은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익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경우'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

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벌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익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조각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위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해행위(상속재산분할협의)의 각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만큼의 한도 내에서 각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권 청구원인

1. 기 제출한 소장의 기재 내용을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모순되지 않는 한 원용합니다.

### 2.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가 채무자인 소의 D에게 가지는 채권액은 2022. 5. 3. 기준 9,605,412원입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 3.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F은 2021. 7. 28.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H, 자녀들인 B(피고1, 수익자), C(피고2, 수익자), D(채무자), I, J를 피대습자로 하는 K 6명이 있었습니다(갑 제6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9호증의 1 제적등본 F, 갑 제9호증의 2 제적등본 L 갑 제9호증의 3 기본증명서 K 참조).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 B, C와 채무자인 소의 D은 형제 관계이고, 위 D의 상속지분은 '2/13'입니다.

1) 피상속인 F의 딸인 J는 L과 혼인하였고 자식으로는 K 1명의 딸이 있습니다(갑 제9호증의 1, 2 제적등본 참조). 그런데 남편 L은 2007. 11. 9. 소의 M과 혼인하였으므로(갑 제9호증의 2 제적등본 L 참조), 이 사건 상속에서 J를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인은 K 1명이 됩니다.

나. 위 F는 2021. 7. 28.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은 2021. 11. 22. 소장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21. 11. 2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입니다.

다.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2/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는 채무자인 소외 D가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가 각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 4. 채무자인 소외 D의 무자력

가. 법원행정처의 2022. 7. 28.자 회신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 D는 2020. 7. 1.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1. 11. 22.)를 거쳐 조희일 현재까지의 사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인 소외 D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것

입니다.

**나.** 아울러,

채무자인 소외 D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1. 11. 22.)

원고에게만 하더라도 6,706,833원(= 원금 2,385,974원 + 인수전이자 1,740,870원 + 인수후이자 2014. 8. 31. ~ 2015. 6. 16. 568,770원 + 인수후이자 2015. 6. 17. ~ 2016. 1. 6. 398,725원 + 인수후이자 2016. 1. 7. ~ 2017. 1. 3. 709,498원 + 인수후이자 2017. 1. 4. ~ 2018. 4. 10. 902,996원) 2018. 4. 10. 기준임. 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을 부담하는

등 함께 금 6,706,833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즉, 채무자인 소외 D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1. 11. 22.)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이었던 것입니다.

**다.** 대법원은 ‘채무초과인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권리 포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

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 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인 소외 D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기한 2021. 11. 2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5. 책임재산의 범위

가. 이 사건 소장에서 밝혔듯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인

2012. 10. 8. 접수 제39431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 조합'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갑 5-1 내지 4 각 을구 1번).

가 마쳐졌었으나,

#### 이 사건 손해행위 이후인

2021. 12. 21. 말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따라서 원고는 손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12년 10월 5일 당시 감정가가 총 99,720,000원(= N 토지 11,308,000원 + O 토지 3,804,000원 + O 지상 건물 78,826,000원 + P 토지 5,782,000원)이므로(G 조합의 2022. 9. 23.자 회신 9쪽 참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99,720,000원 이상으로 주입된  
니다.

한편 G 조합의 2022. 9. 23.자 회신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인 2021. 7. 28. 기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은 39,980,000원이었고(G 조합의 2022. 9. 23.자 회신 1쪽 참조).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상속재산인 피상속인 F 명의의 예금 5,390,686원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G 조합의 2022. 9. 23.자 회신 2 내지 4쪽 참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상속

예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34,589,314원(= 39,980,000원 - 5,390,686원)이며, 피고 B 이 상속한 부동산과 피고 C 이 상속한 부동산의 가액 비율대로 산정하게 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은 3,804,824원(= 34,589,314원  $\times$  11,308,000/99,720,000),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은 30,784,490원(= 34,589,314원 - 3,804,824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손해행위 당시(2021. 1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산정하면,

소유자가 피고1 B 인 부동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부동산 가액 |                                                                                        |                 |                           |
|--------------------------|----------------------------------------------------------------------------------------|-----------------|---------------------------|
| 별지 목록                    | 대상 부동산                                                                                 | 대상 부동산의 시가      | 참조                        |
| 1                        | 충청남도 서산시 N 912㎡ 답                                                                      | 11,308,000원     | G 조합의 2022. 9. 23.자 회선 9쪽 |
| 순번                       |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내용                                                                        | 손해행위 당시의 채무액 공제 | 참조                        |
| 1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5,000,000원<br>근저당권자 G 조합<br>2012. 10. 8. 결수 제39431호<br>중 부동산 가액 비율에 따른 부담액 | -3,804,824원     | 갑 제5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
| 합계 | 7,503,176원 |  |
|----|------------|--|

따라서 위 부동산 가액 7,503,176원 중 채무자인 소외 D의 상속지분 상당액 1,154,334원(= 7,503,176원 × 2/13)이 채무자인 소외 D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소유자가 피고2 C인 부동산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부동산 가액 |                                                                                        |                 |                             |
|--------------------------|----------------------------------------------------------------------------------------|-----------------|-----------------------------|
| 별지 목록                    | 대상 부동산                                                                                 | 대상 부동산의 시가      | 참조                          |
| 2                        | 충청남도 서산시 O 대 481㎡                                                                      | 3,804,000원      | G 조합의 2022. 9. 23.자 회선 9쪽   |
| 3                        | 충청남도 서산시 O 지상 건물                                                                       | 78,826,000원     | G 조합의 2022. 9. 23.자 회선 9쪽   |
| 4                        | 충청남도 서산시 P 당 731㎡                                                                      | 5,782,000원      | G 조합의 2022. 9. 23.자 회선 9쪽   |
| 순번                       |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내용                                                                        |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액 공제 | 참조                          |
| 1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5,000,000원<br>근저당권자 G 조합<br>2012. 10. 8. 결수 제39431호<br>중 부동산 가액 비율에 따른 무담보 | -30,784,490원    | 갑 제5호증의 2 내지 4<br>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합계                       |                                                                                        | 57,627,510원     |                             |

따라서 위 부동산 가액 57,627,510원 중 채무자인 소외 D의 상속지분 상당액 8,865,770원( $= 57,627,510원 \times 2/13$ )이 채무자인 소외 D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결국, 채무자인 소외 D의 일반채권자에게 피고 B은 1,154,334원을, 피고 C은 8,865,770원의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 원고는 위 책임재산 부분과 원고가 밝힌 피보전채권액(2022. 5. 3. 기준 9,605,412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154,334원과 8,865,770원의 범위 내에서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